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5가합56745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324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5가합567451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 2017. 4. 5.

판결 선고 2017. 4. 2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575,492원 및 그 중 866,144,155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F 사이에 평택시 G 임야 1131m² 중 470/1,131지분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53,470,64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원고에게 53,47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평택시 H 답 474m²에 관하여 2015.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41,675,369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141,675,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C과 피고 F 사이에 평택시 G 임야 1131m²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679,728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F는 원고에게 128,679,7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3. 6.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960,000,000원(피고 회사가 대출받을 1,200,000,000원의 80%), 보증기간 2013.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B, C, D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피고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 등의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 D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 1) 원고는 2013. 6. 2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 2) 피고 회사는 2013. 6. 20.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1,2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회사가 2015. 8. 4.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21.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878,606,415원(= 원금 872,000,000원 + 이자 6,606,4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한편, 원고는 이후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12,462,26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878,606,415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866,144,155원(= 878,606,415원 - 12,462,260원)이 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에 충당한 12,462,260원에 대하여 4,097원의 확정손해금¹⁾이 발생하였다.

3) 피고 회사,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도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2015. 10. 19. 기준으로 그 비용 잔액은 1,427,240원이다.

라. 피고 B, C과 피고 E, F 사이의 매매

1) 피고 B은 2015. 7. 15.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에게 피고 B 소유의 평택시 H 답 474m²(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평택시 G 임야 1131m²(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661/1,131 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470/1,131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 C은 2015. 7. 10.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안중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1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20.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회사,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다. 피고 E,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867,575,492원(= 대위변제금 잔액 866,144,155원 + 확정손해금 4,097원 + 대지급금 1,427,2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66,144,15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3.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E에 대한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6.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가 2015. 8.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2015. 9. 21. 원고의 대위변제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각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141,675,369원(= 이 사건 제1 부동산 시가 220,410,000원 ~ 78,734,631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256,930원 × (위 220,41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1, 2각 부동산 시가 합계

420,597,000원))}}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41,675,3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주장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2013. 6.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가 2015. 8. 4.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2015. 9. 21. 원고의 대위변제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각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위 부동산 지분이 유일한 부동산임에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128,679,728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시가 200,187,000원 - 71,507,272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256,930원 × (위 200,187,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시가 합계 420,597,000원))}}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F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28,679,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F 가)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제1, 2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E는 어머니 I에게 저축한 돈을 맡겨 관리하던 중 이모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F도 투자처를 찾던 중 이웃인 I의 소개로 그 동생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피고 B,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E, F는 모두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피고 B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B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7.경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 회사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은행에 원금만 12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점차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2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안중농협 포승지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법원의 역삼세무서,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 2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다음 <표1>기재와 같이 총 3,356,616,990원 상당이 있었고, 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다음 <표2>'인정된 채무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2,814,363,732원 상당(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도 순번 1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에 포함)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피고 B의 적극재산

1	서울 은평구 K 임야 12,641㎡ 10분의 9 지분	1,990,957,500원
2	평택시 L 임야 1,557㎡ 756000분의 85500 지분	23,032,478원
3	평택시 M 임야 1,020㎡	208,080,000원
4	평창군 N 임야 64㎡ 24595분의 9719 지분	5,412원
5	당진시 ○ 전 2,730㎡ 5분의 1 지분	38,547,600원
6	당진시 P전 932㎡	76,424,000원
7	당진시 Q 임야 793㎡	72,163,000원
8	성남시 분당구 R 406-201	610,000,000원
9	평택시 H 답	220,410,000원
10	평택시 G 임야 1131분의 661	116,997,000원
합계	3,356,616,990원	

<표2> 피고 B의 소극재산

1	원고	867,575,492원	867,575,492원	
2	우리은행	483,000,000원	483,000,000원	
3	당진농협	100,000,000원	100,000,000원	
4	안중농협	80,000,000원	80,000,000원	

1	원고	867,575,492원	867,575,492원	
5	"	150,256,930원	150,256,930원	
6	국민은행	30,000,000원	30,000,000원	
7	낙원새마을금고	576,000,000원	576,000,000원	
8	S	453,515,000원	453,515,000원	
9	서광주세무서등	256,102,940원	43,628,480원	양도소득세 2건 제외
10	전문건설공제조합	427,690,844원	30,387,830원	발생 전 미확정채무 제외
합계	3,424,141,206원	2,814,363,732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표2> '원고 주장 채무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424,141,206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표2> 순번 9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 256,102,940원에는 피고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2건 총 212,474,460원(= 107,550,190원 + 104,924,27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2건의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로 보일 뿐, 위 2건의 양도소득세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이전에 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와 같다면 위 2건의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것이며, <표2> 순번 10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 427,690,844원 중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당시까지 발생한 확정채무 30,387,830원은 피고 B의 채무로 인정되지만, 그때까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미확정채무 397,303,014원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인 661/1,131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각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주장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 661/1,131에 관한 부분도 이유 없다.

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피고 C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C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C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본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7. 10.경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 회사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은행에 원금만 12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점차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구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470/1,131 공유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470/1,131 지분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F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 F의 선의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바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F가 2015. 6.경 대신증권에서 168,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2015. 7. 10. 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C은 I의 동생이고 I은 피고 F의 이웃인 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5. 8. 4.로부터 불과 보름여 전인 2015. 7. 20. 같은 달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그 공시지가인 199,508,400원보다 저렴한 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잔금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 C이나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F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안중농협 포승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150,256,93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는 220,41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200,18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인 200,187,000원 중 피고 C 지분 상당액 83,190,000원(= 200,187,000원 × 470/1,131 지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피고 C 지분 상당액 29,719,360원(= 150,256,930원 × 83,190,000원/420,597,000원2)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김현정

판사김민정

1) $12,462,260\text{원} \times \text{연 } 12\% \times 1\text{일}/365\text{일} = 4,097\text{원}$ (원 미만 버림)

2) 이 사건 근저당권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시가 합산액이다.